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 (제2023-28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보건복지위원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한의학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 대한약사회장,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부곡병원장, 국립춘천병원장, 국립공주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재활원장, 국립마산병원장, 국립목포병원장,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무관	천민영	행정사무관	연가	보험급여과장	정성훈	전결 2023. 12. 28.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6378	(2023. 12. 28.)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738	팩스번호	044-202-3930	/ reve7@korea.kr	/ 대한민국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